

행정기관명

수신자 ()
(경유)

제목 주민등록사항 통보

「주민등록법」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사항을 통보합니다.

1. 기본사항

◦ 등록기준지:

◦ 현 주 소:

세대주 성명 및 관계: 의

세대주 주민등록번호: -

2. 통보내역

◦ 신고일자 및 사유: 년 월 일 ()

◦ 통보내용

성명	통보내용

※ 통보내용란에는 1) 주민등록번호 정정, 2) 신규등록, 3) 성명 정정에 따른 해당내용을 기재함.

붙임: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부. 끝.

발신명의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전화 () 전송 () /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<신고사유별 통보내용>

1) 주민등록번호 정정

성명	정정 전 주민등록번호	정정 후 주민등록번호

2) 신규등록

성명	주민등록번호	세대주와의 관계

3) 성명 정정

정정 전 성명	정정 후 성명	주민등록번호